건설근로자공제회 Construction Workers Mutual Aid Association	보 도 자 료	휴먼뉴딜 한국판뉴딜

보도 일시	2022. 3. 1.(화) 12:00 2022. 3. 2.(수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1.(화) 12:00
담당 부서	고객사업본부 고객복지팀	책임자	팀 장 한승민 (02-519-2090)
		담당자	차 장 김희택 (02-519-2096)

건설근로자 초등학교 취학자녀 축하금 신청하세요!

-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-

□ 건설근로자공제회(이사장 송인회)는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·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○ 해당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,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,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.

○ 신청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(또는 직전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.

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발급 안내

'20.11.27.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
('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)
※ 우체국금융,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

○ 신청접수는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'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.or.kr/hanaro)' 온라인 신청, 가까운 공제회 지사·센터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, 접수는 2022년 3월 2일(수) 09시부터 진행된다.

□ 공제회는 선정된 대상자의 ‘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’에 바우처 형태의 복지포인트 20만점을 지급하며, 당해년도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.

□ 건설근로자공제회 송인회 이사장은 “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자녀양육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”라고 말했다.

붙 임 : 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」사업 안내문 1부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[붙임]

2022년 건설근로자 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」 안내

「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」 사업은 **선착순**으로 **진행**됨에 따라 예산이 모두 소진된 이후 접수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편성시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지원내용

구 분	내 용
신청 자격	○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*인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*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(신청일 전월 기준) 동안의 근로내역 적립일수를 말함 - 2022년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자 - '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' 소지자 **※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란?** 2020.11.27일부터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누락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직접 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카드임 **('24년 이후 모든 퇴직공제가입사업장 의무 사용)** - 우체국금융, 하나은행 전 지점에서 발급 가능
신청 기간	○ 연중 상시 접수
지급 내용	○ 본인명의의 **'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'**에 **'건설근로자 복지포인트' 20만점**(20만원) 지급
제한 사항	○ **퇴직공제금 청구자, 청구중인 자**는 신청 불가 ○ 당해연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자녀에 한해 지원 ○ **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**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**1인만 신청 가능** ○ **복지포인트 수령**은 건설근로자(피공제자) **본인명의의 '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'로만 가능**
신청 서류	○ 신청서 1부. ※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, 외국인의 경우 여권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○ 신분증 사본 1부. ※ 온라인 신청 시 불필요, 우편, 팩스 신청 시 제출 ○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1부. ※ 해당 초등학교, 주민센터 발급 가능 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. ◆ **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제출**,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해 유효

2. 접수방법 : 온라인*(PC, 모바일),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, 우편(등기), 팩스

*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www.cw.or.kr/hanaro)

3. 공제회 지사·센터 연락처【상담 및 접수】

- 전화 : 1666-1122(내선)

구 분	서울지사	경기지사	인천지사	부산지사	대구지사	광주지사	대전지사
내 선	311번	313번	312번	321번	322번	331번	341번
구 분	**서울남부센터**	**원주센터**	**의정부센터**	**창원센터**	**전주센터**	**제주센터**	**청주센터**
내 선	315번	343번	314번	323번	332번	333번	342번

붙임 **참고자료**

2021년도 「건설근로자 정책자문위원회」 세미나 개요

1 일시 : ‘22.2.11(금) 10:00~12:00

2 장소 : 건설근로자공제회 15층 대강당

3 좌장 및 발제자·토론자 소개

○ 좌장 : 심경우 위원장(前 근로복지공단 이사장)

○ 발제자

성 명	소속 및 직책	비고
임화진 팀장	공제회 기능등급관리팀장	1주제
심규범 센터장	공제회 조사연구센터장	2주제

○ 토론자

성 명	소속 및 직책	비고
이운주 위원	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	고용개선 분과
홍성준 위원	전문건설공제조합 팀장	
이명래 위원	그린건축기술사사무소 이사	
안홍섭 위원	군산대학교 교수	근로복지 분과
송주현 실장	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정책실장	
신영철 위원	건설경제연구소장	

4 발제 및 토론

- (1주제)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출범 성과 보고
- (2주제)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취지 및 추진방향

5 진행순서

시 간(분)	내 용	보고 및 진행
10:00～10:05 (05‘)	▪ 개회 및 이사장 인사말씀	이사장, 간사
10:05～10:25 (20‘)	▪ 1주제 발제	발제자(임화진)
10:25～10:45 (20‘)	▪ 2주제 발제	발제자(심규범)
10:45～11:55 (70‘)	▪ 토론 및 청중 의견청취	좌장(위원장), 토론자 등
11:55～12:00 (05‘)	▪ 마무리 말씀	좌장(위원장)

[발제1]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출범 성과 보고

Ⅰ. 목적

1. 추진배경

○ 산업특성상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건설근로자의 숙련인력 부족으로 숙련된 내국인력 고용에 대한 인력난 심화 추세

2. 목적

○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따른 처우개선 체계를 마련하여 직업전망을 제시하고, 안정적인 숙련공 유입으로 건설산업 생산성과 시공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기능등급제 도입

Ⅱ. 2021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

1. 기능등급제의 안정적 출범

○ 건설 노·사·민·정이 참여한 '제도추진TF'운영을 통한 의견 수렴

○ 제도 운영기준 설계를 위한 도입기반 연구 추진

○ 하위법령 정비(대통령령 개정, 국토교통부령·고시 제정)

○ 기능등급 관리시스템(건설기능플러스) 개발 및 경력정보 연계

2.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

○ 기능등급제 출범에 대한 건설현장, 근로자 및 대국민 홍보 실시

○ 기능등급보유자 배치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장* 운영

* 경기도 발주공사 10개소

3.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용역 추진

Ⅲ.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

1.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·훈련 체계 구축

○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·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('21.10~)

- (교육) 초급→중급→고급으로 승급된 경우 직종별 등급별 교육과정 설계

☞ 기능등급제 등급별 기능수준 신뢰성 확보 등 위한 승급교육 실시(국토부)

- (훈련) 기능향상훈련 과정(12개 직종)과 기능등급제 연계 훈련체계 구축
  ☞ 現 기능향상훈련에 기능등급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수준별 훈련 추진(고용부)
- (관리자 교육) 관리자(고급·특급) 교육과정 설계를 통한 교·강사 양성 등
  ☞ 관리자 및 교·강사 교육과정 설계 및 양성방안 마련 등 추진

2. 기능등급제 시범사업 운영 및 적용확대

○ 경기도 발주공사 대상 시범사업 추진

- (대상사업장) 경기도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10개소('21.7~)
  * 경기도건설본부(건축 5개소) 및 경기주택도시공사(토목 5개소)
- (기능등급제 도입) 현장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기능인이 직접시공공사의 해당 공종 현장관리자 및 필수인력으로 의무 배치

○ 공공발주 사업장 대상 시범사업 확대 추진

- (개요) 국토부 산하기관 및 지자체 등에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시범적용 제안 및 정책건의 활동 등을 통한 시범사업장 확대 추진
- (기능등급제 도입) 기능등급보유자 현장관리자 및 필수인력 배치, 안전·품질 업무 담당자 활용 등 도입방안 마련

3. 기능등급제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활동 강화

○ 기능등급제 활용분야 발굴 및 법제화 등을 위한 정책 건의활동 추진

<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의 법제화 방안(안) (예시) >

구 분	주요 내용	관련 법령
시공능력평가	- 기능인 보유현황에 따라 등급별 가중치 부여	·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
건설업체 등록기준	- 건설업 등록기준에 기능인 보유기준 지정 및 기준에 따른 자본금 경감 등	·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, 제10조
건설현장 배치기준	-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에 등급이 부여된 기능인도 반영	·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
입낙찰 제도	- 종합심사낙찰제·적격심사제에 등급보유자 반영 * (종심제) 사회적 책임 중 건설인력 고용항목 등	·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(조달청)
	- 적격심사제 반영 * PQ 신인도 항목에 반영 등	· 적격심사 세부 기준(조달청)

※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'고용' 인센티브부터 단계적 검토 후 '임금' 인센티브까지 적용을 통한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 체계 완성

4. 제도 홍보 및 인지도 강화

○ 온-오프라인 홍보·교육 활성화

- 대표홈페이지를 통한 제도 안내,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간담회 등 추진

○ 근로자 현장 홍보 강화

- 대규모 건설 사업장, 기능향상훈련기관 방문 홍보 및 교육 실시

○ 사업주 대상 홍보 및 소통확대

- 종합건설업, 전문건설업 사업주별 설명회 실시 및 자문회의체 구성·운영

○ 발주기관 협조체계 구축

- 주요 발주기관 대상 기능등급제 안내·홍보자료 배포 및 제도 설명회 추진

[발제2]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취지 및 추진방향

('제 값'확보 및 전달, 건설현장 정상화, 지속가능 성장 인프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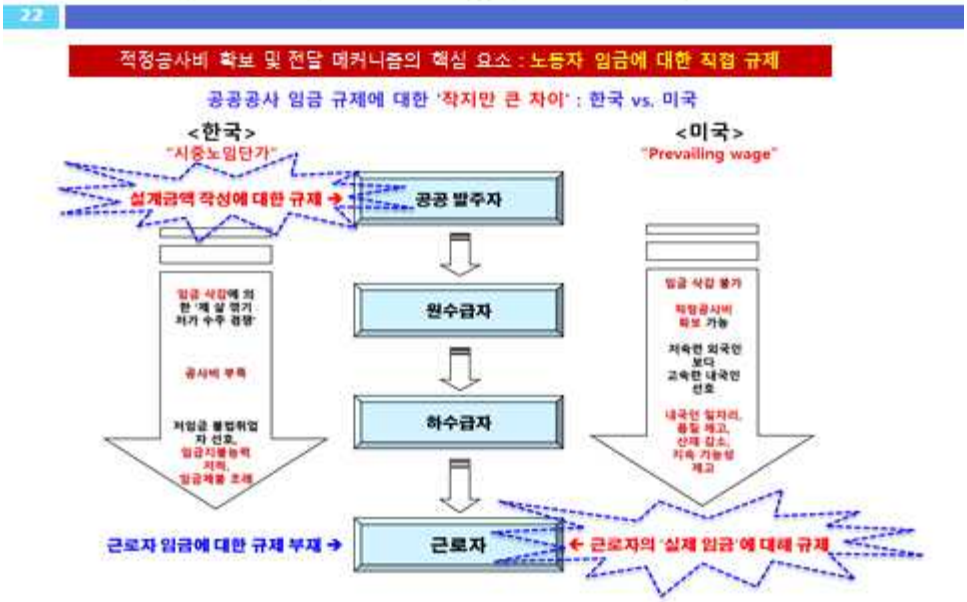
1. 적정임금제 도입 취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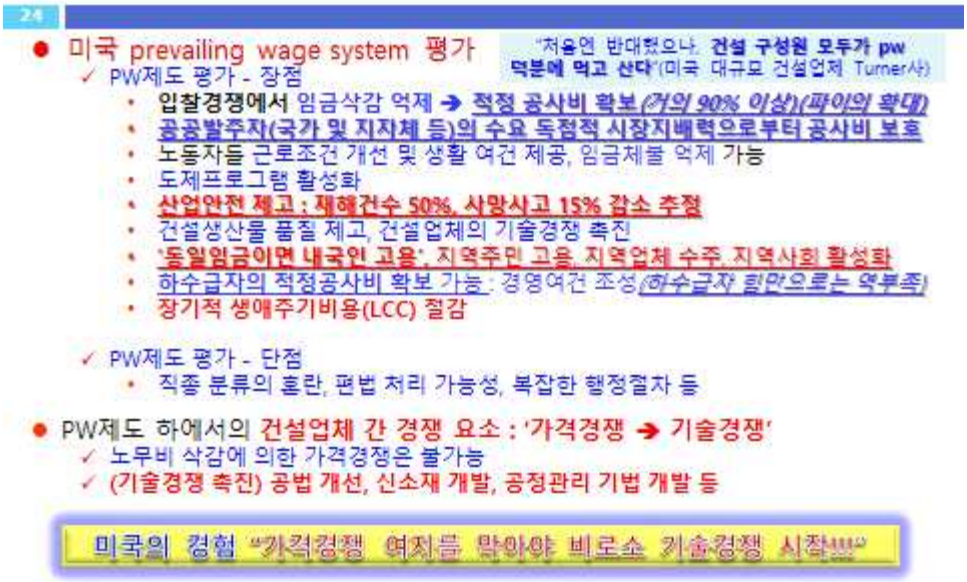


2. 미국 : prevailing wage 제도

(미국) 적정공사비 확보 및 노동자까지 전달
➔ 시공 정상화 ➔ 안전 및 현장 정상화



(미국)공사비 확보 ➔ 시공 정상화 ➔ 안전 및 현장 정상화



3. 국내 : 서울시, 경기도, 시범사업

(서울시 실험) '적정임금제' 성공 가능성 시사

➔ '시중노임단가 지급 의무화' 조례 제정, 특수계약조건 추가('17.7월)

28

- 서울시 시범사업 현장 상황 개요 : 전체 공사 및 투입 인원 등
  - 공사명칭 : 올림픽대로-여의도간 진입램프 설치공사
  - 공사금액 : 예정가격 약 99억원, 낙찰금액 87억원, 주/부계약자 모두 낙찰률 약 87%
    (시범사업 현장) 발주자(100)-주계약자(87) & 부계약자(87)
    (유사 일반현장) 발주자(100)-원도급자(83)-하도급자(68=83×82%)-불법재하도급(54=68×80%)
  - 2018년 6월 현재 공정률은 약 50%, 2019년 상반기 완공 예정
- 시행 중인 제도 및 행정수단
  - 주계약자 공동도급 :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주, 계약자의 직접시공 의무화
  - 적정임금제 :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
  -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 : 포괄임금제 배제, 제반 수당 별도 지급
  - 건설노동자 적정임금 지급/인력관리시스템 : 전자카드+근로일수/시간 ➔ 임금 산정
  - 대금e바로(노무비지급명세) : 발주자 직접 임금 지급
- 기능인력 투입 상황(골조 분야) : 외국인 없이 100% 내국인으로 구성 ('18.6 면담내용)
  - 대체로 하루 20명 투입 : 형틀목공 10명, 철근공 6명, 비계공 4~5명
  - 50대 중반에서 최고 68세(본 현장의 연령 제한은 70세 이하)

* ('18년 말까지) 총인원 5,405명=5,129명(내국인,95%)+276명(영주권 · 중국동포,5%) (건설경제신문, '19.4.3)

공공기관의 '적정임금제' 시범사업 추진 성과('18~)

➔ 낙찰률 상향, 임금 상향, 내국인 고용 상향 등

31

종합심사 낙찰제 vs 적정임금제 시범사업

발주기관	2018년 평균 낙찰률 (%)	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낙찰률 (%)	
		경쟁	비경쟁
LH공사	78.6 (46건)	85.9, 80.9	90.3, 79.6
철도공단	76.8 (2건)	79.6	83.5
도로공사	78.7 (20건)	87.2, 86.8	87.1
수 공	79.6 (2건)	-	86.9

-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현장, 임금 최대 16% 상승(대한경제, '20.20.5)
  -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'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'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, 적정임금제 시행 현장은 미시행 현장과 비교해 4~16%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었다. (중략)
  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와 한국도로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수자원공에서 총 20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.
  - 이 가운데 LH 창원가포 A-1BL 현장을 보면, 보통인부 임금이 다른 현장에 비해 4%, 철근공과 형틀목공은 각각 10%와 16%의 임금 상승효과가 있었다.
  - 내국인 고용비율도 늘어났다. 통상 건설현장 인력의 30% 가량이 외국인력이지만 적정임금제 적용 현장은 전체 근로자 중 내국인이 90% 내외 수준이다. 현장 인원 100%가 내국인으로 채워진 곳도 두 곳 있었다. (후략)

4. 효과적 추진 방향

★ 적정공사비 확보 및 노동자까지 전달

33

이중적 의미에서의 '적정공사비 지키기' : 적정임금제로 구현 가능

수요독점자(정부 등)의 예산절감 정책
(최저가제, 종심제, 실적공사비, 표준시장단가 등)

→ 적정공사비 (적정노무비) ←

입찰자의 '제 살 깎기' 저가수주 경쟁
(합리적 근거 없는 임금단가 또는 노무량 삭감)

생산단계 말단의 노동자에게까지 전달할 '적정임금 지키기'

강 ← 역관계 → 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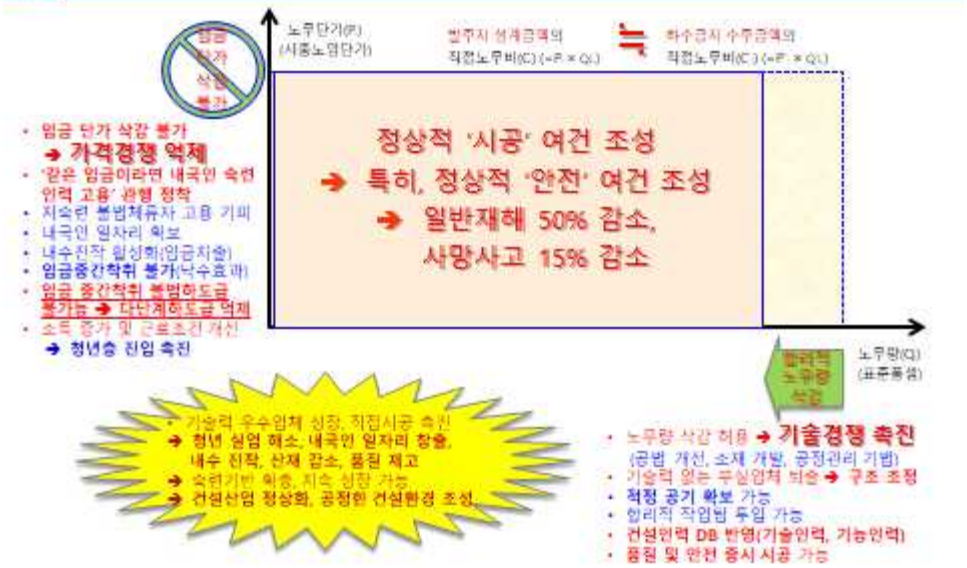
발주자 — 원수급자 — 하수급자 — 노동자

"설계금액에 반영된 임금" = "노동자가 실제 수령해야 할 임금" 규정 ➔ 차액은 명백한 '임금중간착취'

임금중간착취(노무비 누수) 불가 ➔ 임금지불능력 보유+내/외국인 동일임금 지급 ➔ 내국인 숙련인력 우선 고용

★ 적정임금제+기술심사(공공발주기관으로서 검토)
➔ 기술력 보유 우수업체의 '제 값 수주' ➔ 건설 안전 효과 제고

34



- 임금 단가 삭감 불가
  ➔ **가격경쟁 억제**
- '같은 임금이라면 내국인 숙련인력 고용' 관행 정착
- 지속된 불법체류자 고용 기피
- 내국인 일자리 확보
- 내수진작 활성화(임금지출)
- **임금중간착취 불가**(낙수효과)
- 임금 중간착취 불법하도급 불가능 ➔ 다단계하도급 억제
- 소득 증가 및 근로조건 개선
  ➔ 청년층 진입 촉진

- 기술력 우수업체 성장, 적정시공 촉진
  ➔ 청년 실업 해소, 내국인 일자리 창출, 내수 진작, 산재 감소, 품질 제고
  ➔ 숙련기반 확충, 지속 성장 가능
  ➔ 건설산업 정상화,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

- 노무량 삭감 허용 ➔ **기술경쟁 촉진**
  (공법 개선, 소재 개발, 공정관리 기법)
- 기술력 없는 무실업체 퇴출 ➔ 구조 조정
- **적정 공기 확보** 가능
- 합리적 작업팀 투입 가능
- 건설인력 DB 반영(기술인력, 기능인력)
- 품질 및 안전 중시 시공 가능

'건설안전 정상화'를 위한 '적정임금제'의 효과적 추진 방안
➔ (지자체 및 공공기관 적용 확대) + (법 개정으로 일반화)

38

- **(기대효과)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➔ 내국인 고용, 도급단계 축소 등 ➔ 건설 정상화**
  - (내국인 우선 고용) '같은 임금을 줄 바에는 내국인 우선 고용' 관행 확산
  - (다단계 하도급 해소) 임금단가 삭감을 목적으로 자행되는 하도급 유인 상실
  - **('단가 후려치기' 억제를 통한 시공 및 안전 정상화) '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' ➔ '시공 정상화 ➔ 안전 정상화' 여건 조성 ➔ 무리한 공기단축 예방, 제반 안전 규정 준수 ➔ 안전제고 노력 성과 가시화**
- **(지자체 및 공공기관 적용 확대)** 법 개정과 별도로 적정임금제 확대 추진
  - (대상) 지자체, 공공기관 발주공사, 한국판뉴딜사업, 예타면제사업 등
  - ('21년~) 적정임금제 법 개정 이전, 해당 기관 공사 발주 또는 해당 사업 발주 시 적용
  - **(방법) 지자체 조례 제정, 기재부 특례 인정**
- **(법 개정으로 일반화)** 적정임금제 법 개정 완료, '23년 도입 이후 조기 확대 필요(안)
  - ('23년~) 국가, 지자체 발주 300억원 이상 ➔ **'공공기관' 포함, '100억 원 이상'으로 확대 필요**
  - ('25년) 공공 10억원 이상, **민간 100억원 이상** 적용
  - ('27년) 모든 공공공사, 10억원 이상 민간공사 확대 적용 ➔ **('30년) 모든 건설공사**